

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

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국내 농식품·농산업 관련 수출 활성화를 위해 「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 사업」의 지원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1. 사업개요

- 지원내용 :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의 1:1 바이어 초청 비용 지원
- 지원대상 및 규모 : 농식품 수출업체 26개사

※ 지원 제외 대상

- aT 지원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사업 선정업체 * 신청형업체의 경우, 개별바이어 미신청 시 가능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공시대상기업집단
- 수산물·수산물가공식품 수출업체
- 수출업체와 자회사 또는 모회사 관계, 현지 법인인 경우

○ 지원항목

구분	항공료	숙박비	국내교통비
내용	바이어 1인 국제선 이코노미 왕복 항공운임	바이어 1인 국내 체류 숙박비용	철도(KTX, SRT), 버스(공항리무진 등), 국내 항공(원거리의 경우) * 출발지-목적지 확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
지원기간	선정발표일 ~ 2026년 11월 내 초청 완료 및 정산요청 진행 건		
지원한도	연 1회, 실 지출비용의 80% 지원, 총 250만원 한도 (숙박비) 최대 5박, 정산승인액(인정액*80%) 100만원 한도 내		

2. 신청 방법

- 신청기간 : 2026년 1월 28일(수) ~ 2월 12일(목) 23:59까지
- 신청방법 :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내 신청서 접수

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→ 사업신청 → 모집공고 → 「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가업체 모집공고」 선택 후 사업신청

* 주말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, 오프라인 및 메일 접수는 불가, 신청 마감일 전까지 수정·보완 가능

○ 제출서류

구분	내용
필수	① 사업 신청서(공고 내 붙임자료 확인(엑셀)) ② 무역통계 정보제공(Tmydata) 동의 필수(붙임3) ※ 기존 미동의 업체에 한하여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명서 ※ One pass를 통해 제출(공고 내 붙임자료 확인) ④ 바이어 참가확인 및 동의서(붙임4)

구분	내용
선택	⑤ 초청 바이어 2025년 수입실적 증빙(공고 내 엑셀파일 두 번째 시트 (입력)바이어 수입실적에 입력) ※ 수입실적 증빙 - 바이어사 명의의 invoice - 바이어명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신고필증 - 해당 국가에서 발행한 수입실적 증빙서류 ⑥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국산원료 사용증빙 ※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, 주원료의 국산 원재료의 납품 확인서, 원산지증명서 제출 시 국산원료사용 가공농식품으로 인정 ⑦ 계약이행실적 증빙 (2023년~25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여 수출업체 대상) ※ 기 초청 바이어와의 MOU 및 수출 계약서, 수출신고필증 등

3. 선정평가 및 결과 발표

* 붙임 1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선정기준 참고

구분	내용
선정방법	100% 계량평가를 통한 고득점순 선정
결과발표	2026년 2월 25일(수) 18:00 이후
결과발표 확인방법	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사업신청관리 → 선정확인

* 선정 심사일 변경에 따라 결과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

4. 참가 유의사항

- 업체당 바이어 초청계획 변경은 1회로 한정(국가, 바이어사 등)
 - * 바이어 초청 일정 및 초청 바이어(국가, 초청자), 중도 포기 등 변경 사항 발생 시, 사전 공문을 통해 관할 지역본부 보고 필수(초청 바이어사 변경 시 바이어 수입실적 증빙 제출 필수)
 - * 중도포기 시, 향후 1년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지원 배제

- 문의처 : aT 바이어사업부 안지민 주임(061-931-0987, jm@at.or.kr)

※ 붙임 :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선정 및 정산기준,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방법

붙임 1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선정기준

평가항목		평가 내용	평가 배점		
바이어 (50)	수출 전략 국가 (20)	① 신시장 : 중동, 중남미, 인도 ② 유망시장 : 유럽 아세안 ③ 주력시장 등 : 북미, 일본, 중국 등 신시장·유망 외	20 (신시장)	15 (유망)	10 (주력 등)
	수입규모 (30)	• 바이어 연간 수입규모 * 2025년 기준 한국산 농식품 수입실적 증빙 제출	30 (USD 30만불 이상)	20 (USD 10만불 이상~30만불 미만)	10 (USD 10만불 미만)
수출업체 (50)	비대면 환경대응 (10)	• 수출상품 K-Food Trade 등록 여부 - K-Food Trade 홈페이지 가입 후 제품 등록 * 기존 회원가입 업체는 공고기간 내 최신화 필수	10 (등록)	0 (미등록)	
	신규 · 기존 참가기업 (10)	• 신규 참가기업 * 최근 3개년('23~'25) 내 본 사업 미참여 기업	10 (신규 참가)	0 (기존 참가)	
		• 기존 참가기업 :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- 과거 초청 바이어 간 계약이행실적 증빙 제출 여부 ¹⁾	10 (제출)	0 (미제출)	
	상담희망 품목 (30)	• 농가소득 연계 품목 여부 ① 신선농산물 ② 국산원료사용 가공농식품 * 품목제조보고서 ²⁾ 상 주원료로 국산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* ③ 기타가공식품(품목제조보고서가 없는 경우) ³⁾	30 (신선)	25 (가공)	20 (기타가공)
가점(10)	• 사업성과 제고 - '24년 BKF+ 수출성공사례집 게재 업체(5점) - '25년 「K-Food+ 수출탑」 수상업체(5점)	5 5			

※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제출 필수

※ 초청 바이어는 2025년(2025.01.01.~2025.12.31.) 중 한국산 농식품 수입실적이 있어야 하며, 수출업체와 자회사 또는 모회사 관계, 현지 법인의 경우(해외 바이어사의 국내 법인인 경우 포함) 선정 제외

※ 품목제조보고서상 원재료의 원산지 표기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, 주원료의 국산 원재료 납품확인서, 원산지 증명서, 국산원료 구입 서류(계산서, 카드매출전표, 출하확인서 등) 제출 시 국산원료 사용 가공농식품으로 인정

1) 계약이행 실적 증빙 : 계약서, 수출신고필증 등 개별바이어 초청사업을 통한 계약이행 실적 증빙

2) 품목제조보고서 : 식품, 식품첨가물, 축산물 제조·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을 제조하고자 할 때 관할 시/군/구에 보고하는 영업자 의무사항 보고서

3) 가공농식품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미제출 시 기타가공식품으로 분류

붙임 2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정산기준

- ※ aT 타 수출지원사업(농식품글로벌성장파키지,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육성 등) '바이어 초청 항목으로 중복 선정 및 지원 불가
- ※ 초청일자 및 초청 바이어사 변경은 반드시 기존 초청일자 도래 전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보고 필수
- ※ 바이어 초청일(최초 입국일)로부터 1개월 이내 결과보고를 원칙으로 함
- ※ 모든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요청은 12월 1주차까지 제출완료 원칙

〈 신청서류 〉

기 본	○ 사업 신청서
바이어 수입 규모	○ '25년 기준 한국산 농식품 수입실적 증빙(바이어사 명의로 Invoice, Packing List, B/L 등 수출·입신고 관련 서류) 제출
기 타	○ (수출업체) 사업자등록증명서, 무역통계 정보제공 동의 ○ (바이어, 수출업체) 바이어 참가 확인 및 동의서

〈 정산서류 〉

기 본	○ [필수] 결과보고서 - 공식 초청 일정별 사진 증빙 제출 필수 * 공장 및 산지견학, 상담 사진 등(식사 사진 지양) ○ [필수] 초청자 인적사항(①명함, ②여권 사본)
항공료	○ [필수] 항공사 발행 e티켓 ○ [필수] 항공사(혹은 여행사) 발행 인보이스(결제 증빙 포함) ○ [필수] 지출증빙(지출일자 및 금액이 명시된 영수증 혹은 매출전표, 수표의 경우 수표 사본 및 출금내역)
숙박비	○ [필수] 호텔 발행 숙박내역서 (투숙객명, 투숙일자별 금액 필수 포함) - 투숙객명과 초청 바이어명이 동일한 것이 원칙이나, 수출업체 선예약으로 투숙객명이 수출업체 담당자인 경우, 해당 담당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필요 ○ 여행사 발행 인보이스 * 직접 예약 건의 경우 생략 가능 ○ [필수] 지출증빙(지출일자 및 금액이 포함된 영수증 혹은 매출전표)
국내 교통비	○ [필수] 행선지, 일자, 금액 등이 확인가능한 교통비 지출증빙(영수증, 승차권) - 차차 유류비, 렌터카 이용에 따른 금액 정산 불가 - 국내 항공료의 경우, 항공료 정산 기준과 동일(동일 권역 내 이동 내역은 정산 불가)
수출실적	○ 수출신고필증 혹은 바이어와의 MOU 계약서 - 바이어 방문(최초 상담일) 이후 발행 필수 - 품목, 계약금액 또는 MOU 체결금액 명시 및 해당 건에 대한 증빙 제출 - 정산서류 제출 시 실적이 없는 경우, 연내 보완
증빙제출 유의사항	○ 모든 정산은 수출업체가 선 집행한 후 항목별 정산기준에 맞춰 사후 정산함. ○ 공식 초청 일정별 사진 증빙 제출(공식 일정의 각 일자별 증빙 사진 1매 이상 제출) - 공장 및 산지 견학, 상담 사진 등 바이어와의 상담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제출만 인정 ○ 항공료 및 숙박비 바이어 결제 시, 수출업체가 바이어사 명의로 송금한 송금증 제출 필수 ※ 현금수령증, 송금내역 모바일 캡처본, 문자 내역 등은 적격증빙으로 승인 불가 ○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나, 사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○ 농식품 대상 상담을 원칙으로 함(수산물·수산물가공식품 및 농기계 관련 상담 시 정산 불가)

〈 정 산 기 준 〉

항공료 및 국내 교통비	<p>① 바이어 1인 국제선 일반석(이코노미) 왕복 항공료 실비 지급</p> <p>가. 일반석(이코노미) 이외 좌석등급(ex. 일반석 플렉스, 프레스티지 등) 탑승한 경우 → 탑승월 대한항공 국제선 왕복 직항 일반석(Y) 예약등급 전체(Y~L 또는 U석) 비수기, 준성수기, 성수기 평균 운임 한도 적용</p> <p>나. 대한항공 국제선 왕복 직항 운임 없는 경우 → 출발지와 최인근지-서울 간 왕복 직항 운임 한도 적용 → 경유 노선 탑승 가능하나 경유지에서 24시간 초과 체류 시 정산 불가</p> <p>② 국내교통비(공항리무진, 기차, 고속버스, 국내 항공료) 실비 지급</p> <p>가. 상담전후(상담기간 포함) 상담 장소로 이동을 위해 출발지(일)와 도착지(일)가 명시된 국내 이동 교통비 증빙(승차권, 항공권, 영수증 등) 제출</p> <p>나. 렌트카 비용, 자차 이동 유류대, 택시요금 및 동일시(市) 내 이동 대중교통비는 정산 제외</p> <p>다. 수출업체 카드 결제 시, 카드번호 뒤 네자리 증빙 제출 필요</p> <p>※ 입국 및 출국일은 상담시작일-상담종료일 전후 일주일 이내여야 함 (예) 4.10 ~ 4.12(3일) 상담 진행하는 경우, 바이어 입국일은 4.3 이후, 출국일은 4.19 이내여야 함</p>																		
숙박비	<p>○ 바이어 1인 숙박비 정산승인액(인정액*80%) 10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(총 5박 이내)</p> <p>- 숙박내역서 및 증빙 미제출 건 불인정 - 숙박비 이외 얼리 체크인, 레이트 체크아웃, 미니바, 룸서비스 등 비용은 정산 제외 - 수출업체 카드결제 시, 카드번호 뒤 네자리 증빙 제출 필요</p> <p>※ 상담시작일 전일 도착 하는 경우 도착일자 숙박 인정 (예) 4.10 ~ 4.12(3일) 상담 진행하는 경우, 바이어 입국일이 4.9 이라면 도착일자 4.9 숙박 인정</p> <p>※ 상담종료일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상담 종료일자 숙박 인정 (예) 4.10 ~ 4.12(3일) 상담 진행하는 경우, 바이어 출국일이 4.13 이라면 상담종료일 4.12 숙박 인정</p>																		
지원비율	<p>○ 정산승인액(적격증빙으로 승인된 항공료 및 숙박비 지출액(인정액))의 80% 정산</p>																		
환율 변동비	<p>① 바이어가 현지화로 선지출 후 수출업체가 송금한 경우,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과 수출업체 원화 기준 송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인정함</p> <p>- [기준환율적용액] 항공료, 숙박비 지출이 현지화로 이뤄졌을 경우, 지출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 적용한 금액을 말하나, 지출일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을 적용함</p> <p>- [송금액] 송금액은 송금증 등 증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원화 송금액을 말하며, 원화 기준 송금액이 불명확할 경우 송금액은 송금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을 적용함</p> <p>(예) 6/1 바이어 항공권 구매(USD 1,000), 8/1 수출업체 → 바이어 송금(USD 1,000)</p> <p>(1) 기준환율적용 정산승인액 < 송금액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8/1 송금액</td> </tr> <tr> <td>환율</td> <td>1,300원/USD</td> <td>1,400원/USD</td> </tr> <tr> <td>금액</td> <td>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</td> <td>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</td> </tr> </table> <p>(2) 기준환율적용 정산승인액 > 송금액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</td> <td style="width: 45%;">8/1 송금액</td> </tr> <tr> <td>환율</td> <td>1,400원/USD</td> <td>1,300원/USD</td> </tr> <tr> <td>금액</td> <td>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</td> <td>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</td> </tr> </table> <p>② 수출업체가 현지화로 지출한 경우, 지출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 적용을 원칙으로 하나, 지출일이 불명확할 경우 입국일 기준 송금 보낼 때 환율(하나은행 최초고시)을 적용함</p> <p>※ 수출업체 현지화 카드결제 시, 카드 결제내역 증빙 상 환율 적용 금액 인정</p>	구분	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	8/1 송금액	환율	1,300원/USD	1,400원/USD	금액	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	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	구분	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	8/1 송금액	환율	1,400원/USD	1,300원/USD	금액	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	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
구분	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	8/1 송금액																	
환율	1,300원/USD	1,400원/USD																	
금액	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	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																	
구분	6/1 기준환율적용 정산인정액	8/1 송금액																	
환율	1,400원/USD	1,300원/USD																	
금액	USD 1,000*1,400원 = 140만원	USD 1,000*1,300원 = 130만원																	

*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부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

붙임 3 무역통계제공 동의 매뉴얼

수출지원사업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징구 간소화 서비스

□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목적

- 제공목적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 지원사업 관리
- 증명서 발급기관 : (재)한국무역통계진흥원
- 제공항목 : 신고번호, 신고일, 수리일, 선적일, 수출자, 화주, 제조자, 품명(HS CODE) 수출실적[(중량, 수출금액(\$, ₩)], 수입국, 운송방법, 선적항,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
- 비용부담 :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- 방법 : ① <http://www.trass.or.kr/at.jsp> 접속 → ② 사업자번호로 동의 여부 확인 → ③ 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

aT 수출지원사업
무역통계제공
동의서 제출
간소화서비스

aT수출지원사업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인 무역통계제공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손쉽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제출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서 대기발송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.

Step1

<http://www.trass.or.kr/at.jsp>
접속



Step2

사업자번호로 동의여부 확인



Step3

사업자 공동인증서로 동의



구분	범역
제공목적	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
증명서 발급기관	한국무역통계진흥원
제공항목	신고번호, 신고일, 수리일, 선적일, 수출자, 화주, 제조자, 품명(HS CODE), 수출실적(중량, 수출금액(\$, ₩), 수입국, 운송방법, 선적항,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
조회기간	2019년 1월 1일 ~ 별도 공지시까지
비용부담	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

* 사업자 공동인증서만으로 간편하게 동의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붙임 4**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가 확인 및 동의서**

* 초청 내용에 맞춰 동의서 작성 및 서명 후 스캔본 제출

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참가 확인 및 동의서(수출업체)

구분	내용	구분	내용
국가		바이어사명	
방문수출업체		방문자명/직위	
방문기간		상담예정품목	

당사는 상기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운영하는 [수출업체명]의 초청을 받아 《 2026년 개별바이어 초청사업 》에 참가함을 확인합니다.

더불어, 상기 명시한 방문기간 동안 수출업체의 초청에 응하여 방문 및 상담에 성실히 임할 것에 동의합니다.

2026. 0. 0.

수출업체명 :

초청자 : (인)

Confirmation and Participation Agreement(Buyer)

구분	내용	구분	내용
Country		Company Name	
Period of Visit		Visitor Name	
Items for Consultation		Position	

We hereby confirm our participation in the <2026 Individual Buyer Invitation Program> operated by 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(aT) as invited by *[Export Company Name]*

Futhermore, we agree to faithfully attend the visit and porticipate in meetings with the exporting company during the stated period.

2026. 0. 0.

Buyer Company Name :

Buyer Name : (인)